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75
----------	-------

발의연월일 : 2025. 7. 23.

발 의 자 : 박성민·구자근·정동만
박상웅·나경원·박형수
이종배·김성원·강승규
이철규·서일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해당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관련 업종의 수탁기업은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납품과정 전반에서 특정 품목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현행 주요 원재료와 같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우선, 주물, 열처리 등 뿌리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포함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주요 원재료”를 “주요 비용”으로 한다.

12. “주요 비용”이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으로서, 그 비중이 각각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비용을 말한다. 주요 비용에 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주요 원재료”를 “주요 비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요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12. “주요 비용”이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으로서, 그 비중이 각각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비용을 말한다. 주요 비용에 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 주요 비용-----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u>주요 원재료</u> ,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 ----- <u>주요 비용</u> , -- -----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